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작업진행계획을 수립하여 독립된 판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자재와 경비를 부담하며, 공사대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수급인이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라면 당해 수급인을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 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해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 예치해야 하나요?

A 보증금 예치는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과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계약전력 5㎾이하의 고객은 제외), 전기사용장소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상기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공급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라도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은 보증금 예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해지를 유예한 경우, 건조물이 없는 경우,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경우, 시장·상가아파트·복합건물 등 단일구좌내에서 여러 고객이 있어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나요?

A 보증금액은 예치대상 고객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년중 1회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전력과 전기사용장소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Q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해 주나요?

A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율 변동치가 ±1%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내과과장 박선수

편도와 아데노이드

목안과 코 뒷부분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물질(세균 등)로부터 일차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편도선과 아데노이드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개 5세 전후까지 점점 커지다가 그 이후에는 작아지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감기를 앓을 경우, 이들 편도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급성인 경우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프며 열이 나고 몸이 춥고 떨리며 머리도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처럼 아프면서 간혹 귀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만성 편도선염은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이물감과 함께 가래를 뱉을 때 악취가 나는 노랗고 좁쌀만한 덩어리가 나와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코가 막혀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며 잦은 목감기로 열이 납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커서 코가 심하게 막히는 어린이는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며 숨이 막히는 무호흡이 동반되고 치열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숙면을 취해야 성장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 발육이 좋아지게 되는데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무호흡이 생긴 어린이들은 성장호르몬 분비가 적어 발육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축농증은 물론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한 중이염도 흔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치료로 아데노이드 결제 수술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수술은 만 3~4세 이후에 대개 시행하며 수술이 위와 같은 증상들을 다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위의 증상들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수술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대부분 외래에서 환자에 대한 문진이나 진찰 및 검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이 대개 4~5일 정도이며 퇴원 후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 바로 적응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타인의 토지 상에 무단 건축한 건물을 양수한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Q 저는 5년 전 甲으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당시 甲은 1968년 10월경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 주택은 1970년 1월경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인접지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차고와 창고를 만들었으며, 빈 공간은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전 친구의 말을 들으니 취득시효제도가 있어 제가 위 소유자 미상의 땅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소유자 미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99조).

그러나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1. 95다28625).

그러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밖에 없으나, 전점유자의 점유는 무단점유의 전형적인 태양이므로 위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무단점유한 부분의 대리를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제가 요즘 자위행위를 너무 자주 하게 되요?

남자들 나이 들어가면 40대쯤 되면 조루나 발기부전이니 뭐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자위를 많이 하면 하루에 3번 적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발기부전 같은 게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자위를 자주함으로써 정력이 그렇게 많이 쇠퇴할까요?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결혼해서 애도 못 낳는 건 아닌지요?

A 자위행위란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좋은 성욕의 해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의 나이에는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도 강해진 성충동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2차 성징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청소년은 성적인 충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위행위를 하는 횟수는 개인마다 다르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친구와 나의 모습이 다르듯이 자위행위를 하는 횟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위를 하실 때에 님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 같은지요? 자연스럽게 님이 성욕이 생길 때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음란물에 자극을 받아 하는 경우인지요? 님은 어떤 때 자위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 보고 자연스럽게 님이 성욕이 생겨서 하는 경우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기분 좋은 자위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독적인 자위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 것 같네요. 자위를 한다고 해서 발기부전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방문을 잠그시고, 손과 성기를 깨끗이 씻고 청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성기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은 자위행위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종

Q 유명메이커 의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방침에 따라 의류 구입자에게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존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예규가 있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둘째 예규, 사업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자격(예를 들면 500포인트 이상)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하는 경우 (이때 마일리지는 상품결재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금액의 10% 할인에 대한 자격수단임) -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인의 거래가 상기 예규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종(031-872-6116)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세요

-포천신문운영위원회 일동-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함.

▶상임고문 최호열
▶고문 이상갑
▶고문 배성호
▶고문 유병호
▶고문 윤이용
▶위원장 박승찬
▶부위원장 나근수
▶감사 이희선
▶총무 이수복
▶부총무 임대섭

▶위원 김재명
▶위원 김태규
▶위원 문재길
▶위원 박영주
▶위원 손상익
▶위원 성능모
▶위원 이종희
▶위원 이희자
▶위원 장재수
▶위원 정한섭

▶위원 최정이
▶위원 최인환
▶위원 황광익
▶위원 송현섭
▶위원 오현규
▶위원 유명천
▶위원 신관수
▶위원 김진우
▶위원 김완수